

## 의료기관의 조세체계 및 조세특례 개선방안

홍기용\*, 김광윤\*\*, 전장식\*\*\*†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삼성서울병원 CS아카데미\*\*\*

### <Abstract>

### A Study on The Tax System And Tax Advantage For Medical Institutions

Ki Yong Hong\*, Kwang Yoon Kim\*\*, Jang Sik Jeon\*\*\*†

*Division of Business University of Incheon\*, School of Business Ajou University\*\**

*Samsung Medical Center, Customer Satisfaction Academy\*\*\**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의료와 교육 분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특히 의료분야에 대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비율이 높고 또한 각종 조세특례를 통해 민간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와 조세특례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결과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 및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요골간은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인을 의료법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영리사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세특례규정은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둘째, 교육과 의료는 중요한 공공재로서 정부가 대등한 입장

\* 이 연구는 2003년도 본 학회에서 연구과제를 주어 수행한 연구임.

† 교신저자 : 전장식(삼성서울병원 CS아카데미 소장)

에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차등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같은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운영주체에 따라 각종 조세특례를 다르게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I. 서 론

대부분의 현대국가는 교육, 의료 등 복지국가의 실현을 지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으로 인하여 교육 분야에 비하여 의료분야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어왔으며, 정부에서도 이에 맞추어 각종 혜택 등을 주면서 육성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 및 의료분야는 대부분 민간분야에서 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의료의 경우 유럽은 국가가 70% 정도 담당하고 있고 미국도 40%를 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10%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병원협회에서 발행한 2002년 전국병원명부에 의하면 병원수기준 민간병원이 89%이고 이중 의료법인은 28%였다(송건영, 2003). 이것은 의료분야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기관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의 의무교육을 비롯, 중고등학교의 시설비, 교사급여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국가의 지원이 많다. 또한 교육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세인 교육세를 별도로 징수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교육관련 각종 조세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의료는 법인세법에서 영리업으로 보아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조세감면 등의 조세지원도 일정부분만 인정할 뿐이며, 별도의 의료세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도 의료의 주수입원인 의료수가가 정부의 통제하에 있으며,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할 수 없는 등 수익창출에 제한을 두고 있는 형편이다. 병원은 오직 비영리법인만 할 수 있으며, 의료수를 통해 모든 의료행위가 묶여있어 병원에서 아무리 의료서비스를 증진시킨다 해도 더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이점에서 의료는 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복지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료에 대해 수입의 비탄력성을 강제하고 있으며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분담율은 10% 정도이다. 따라서 의료를 민간기관이 많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제지

원을 통하여 영리사업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분야의 대부분은 민간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조세지원을 통해 국민의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인 및 관련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이 있으며, 세무당국도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조법 1264-285, 1984 .03 .09]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은 여전히 의료행위를 기본적으로 수익사업으로 규정하여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다.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분야를 민간기관이 담당하고 있다면 국가가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국가가 민간기관을 도와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의료기관이 의료행위의 질적 향상을 위해 투자하는 각종 지출행위에 대해 조세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일반국민은 의료기관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는 단편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돈을 번다는 개념과 의료인의 소득이 많이 생긴다는 측면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는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병원의 운영난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증진을 위해 거론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논외로 한다.

이 연구의 결과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제도 및 조세특례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였으나 주요 골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법인에 대해 의료법은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있으나 세법은 기본적으로 영리사업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각종 조세특례규정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 등 의료업에 대한 발전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같은 복지분야인 교육과 의료는 중요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여가 매우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등과세하고 있는 점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셋째, 같은 의료업을 하면서도 운영주체에 따라 각종 조세특례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과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증진과 운영개선을 위해 정부가 조세측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현행조세체계를 검토한 후 바람직한 조세체계 및 조세지원제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조세체계 및 제도를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문헌연구방법으로 연구되었다.

## II. 선행연구와 국제동향

### 1.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업 대한 조세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으나, 의료업의 전반적인 조세체계 및 조세특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논문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정책연구를 수행하면서 그 일부분으로 의료분야에 대한 연구가 포함된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공해영(1999), 김대영(1999), 김진수(1996), 노재성(2000), 노진곤(1999), 박상임(1994, 1996), 손원익(1995, 1997, 2000, 2001), 이종래(2000), 최삼철(1995), 하홍준(1997), Verz & Stitzel(1999), Montoya(1998), Cain(1998), Yetman(2001), Steinberg(1991) 등이 있다. 공익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영리성 등 법적 성격에 대한 연구로는 윤철홍(1997), 하홍준(1998), Thorpe & Phelps(1991), Gamm(1996), Sansing(2000) 등의 논문이 있다. 특히 의료분야에 한정하여 연구된 논문으로는 김광윤 & 전장식(1999, 2001), 박민(2002), 손원익(2002), Bain, Blankley & Forgione(2001), Zimmerman(1991), Wilkicki(2001), Potter(1992)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정책연구중 김광윤 & 전장식(1999, 2001), 박민(2002), 손원익(2002)의 논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광윤, 전장식(1999, 2001)은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유인을 도출하기 위해 실증연구하고 조세유인으로 의료서비스의 국가의무, 조세불공평성, 비영리성, 질적 수준, 의료비 부담정도 등 5가지의 변수를 선정하여 이것이 의료서비스 증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연구 하였다. 이 연구 결과 의료서비스의 국가의무, 조세불공평성, 비영리성의 인식이 높을수록 의료서비스의 증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반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의료비의 부담수준의 인식이 높을수록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증진이 역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박민(2002)은 우리나라의 의료법인세제에 관한 합리적 개편방안에 관하여 조세법적측면에서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각국의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에 대한 법적규정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의료법인에 대한 조세제도를 분석한 후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방향을 문헌적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의료법인은 비영리성이 강하므로 국가의 조세지원의 배려가 있어야 하며, 향후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손원익(2002)은 우리나라의 의료기관과 관련된 세계의 현황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문헌

적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영리의료법인의 허용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의료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의료사업의 주체에 따라 다르게 세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대규모병원의 경우 수련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면 세법적 지원에 차등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2. 국제동향

### 가. WTO DDA의 보건의료서비스 협상

세계무역기구(WTO)가 1995년에 출범한 후 다자간무역협상이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에 의거 2002년부터 새로이 시작되었다. 이 DDA협상의제에는 7개가 있는데, 이중 하나가 서비스분야이며, 여기에 의료가 포함되어 있다. DDA에 의거 회원국은 2002년 6월 30일부터 각국에 양허요구서(request list)를 제출하고, 2003년 3월 31일까지 양허 안(offer list)를 제출토록 되어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사국들 간 양자협상을 거쳐 2005년 1월 1일까지는 모든 협상을 완료토록 되어 있다.

2003년 6월 11일 현재 WTO회원국 중 1차 양허 안을 제출한 회원국은 전체 146개국 중 25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한 10개국에 속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제출한 양허 안에는 보건의료, 시정각 등 일부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건의료에 대해 양허한 국가는 의료전문직서비스 등에 75개국(일부양허 포함), 병원서비스에 39개국, 기타 보건서비스 13개국 등이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는 준공공재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공익성이 크다는 이유가 국제적으로 양허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UR 당시뿐만 아니라 WTO DDA에 의해서도 의료분야는 양허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미국 등 8개국에 의료(치과 제외), 간호 및 조산서비스에 대해 양허요구 한 바 있으며, 또한 호주 등 6개국으로부터 보건의료서비스분야에 대한 양허요구를 받은 바 있다(보건복지부, 2003).

따라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보건의료서비스분야에 대한 개방 압력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향후 영리법인을 인정하기 위한 다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미국의 의료에 대한 조세체계

미국의 비과세조직에 대한 조세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Subchapter A > CHAPTER 1 > Subchapter F의 면세기관(Exempt Organizations)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인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면세기관의 범위는 내국세법 제501조(C)(3)에 규정되어 있다. 기타 면세기관에 대한 자세한 조건은 내국세법 시행령 제1,501(c)(3)-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인이 자선목적 혹은 종교 활동을 위해 운영된다면 당연히 법인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선 및 종교목적이 아닌 의료행위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그리고 미국의 증여세는 증여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내국세법 제501조(c)(3)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증여받게 되면 당연히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또한 이 경우 내국세법 제501조(c)(3)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증여하는 자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 일본의 의료에 대한 조세체계

일본의 의료법인은 일반 의료법인과 조세특별조치법 제 67조의 2에 의한 특정의료법인으로 구분된다. 법인세법에 의하면 일반 의료법인은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다만 일반 의료법인의 경우 그 규모가 대법인(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엔이하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이면 30%의 법인세를 내고, 중소기업이면 소득구분에 따라 22%와 30%의 법인세를 납부해야한다. 즉, 일반 의료법인은 영리법인과 같이 자본금 1억엔이하인 법인의 경우 연소득 800만 원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22%의 법인세가 적용되고, 연소득 800만 엔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30%가 적용된다. 그러나 자본금이 1억 엔을 초과하는 법인은 연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30%가 적용된다. 그러나 공익법인인 의료법인과 특정의료법인은 22%의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된다(杉山幹夫, 2001, p. 152).

의료법인이 사회보험진료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에는 비과세되지만 그 외는 보통영리법인에 비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橋留隆志, 2002, p. 222). 의료법인의 경우 사업소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의료법인에 대한 소비세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의료용역은 전액 비과세된다. 그러나 특정의료비의 지급에 관계된 의료는 일정범위 내에서 비과세하고, 정상분 만은 전액 비과세되며, 건강진단은 과세되는 등 의료내용에 따라 소비세의 과세 혹은 비과세가 다르게 정해진다. 그리고 의료법인의 매출액이 2억 엔 이하의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 Ⅲ.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지위와 납세의무

#### 1. 의료기관의 법적지위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법인 혹은 개인에 의거 운영되고 있다. 세법에서는 의료기관이 법인 혹은 개인인가에 따라 다르게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법인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의료법인은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라는 면에서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통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각종 납세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영리법인은 영리성이 없는 법인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의료법, 세법 등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첫째, 민법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일반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1조 및 제2조에서 법률목적과 공익법인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의 제정목적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 법률에서 공익법인이라 함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의 범위에는 모든 비영리법인이 포함된 것도 아니고 또한 모든 공익법인이 포함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라는 용어가 공익법인보다는 광의로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의료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의료법인은 물론이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법 제44조의 “의료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라고 규정과 관련된다.

의료법인이라 함은 의료법 제30조에 의하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 투자 기관·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아니다. 의료법상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법 제41조에 의거 정관과 기타서류를 갖추어 당해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 제44조는 의료법인에 관하여 의료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법 제45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일정조건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거 특수한 지위에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의거 의료업을 행하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의료법 제2조는 의료업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의료법 제25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그리고 의료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내에서만 의료업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즉, 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③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④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의료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만 허용된다.



## 2. 의료기관의 납세의무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영리성과 비영리성, 법인과 개인이 모두 혼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각 나라에서는 의료기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조세체계가 다르다.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영리성과 비영리성에 대한 개념정의의 문제이다. 영리성과 비영리성은 주체가 투자재원으로부터 발생한 투자증분 액을 분배받는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내부 유보되지 않은 잔액은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영리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조직이다.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501조 (c) (3)에서는 비영리성을 갖는 면세기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조직의 순이익은 그 조직의 출자자 혹은 개인을 위해 사용되지 말아야 하며, 당해조직은 입법에 영향을 주기 위한 선전 등의 목적을 갖고 있지 말아야 하고, 특정후보를 위한 정치적 선거활동에 참여 혹은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기타 면세기관에 대한 자세한 조건은 내국세법 시행령(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1,501(c)(3)-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자선 등의 목적에 의거 비영리적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면세기관에 해당하지만 그 외에는 영리성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영리성과 비영리성을 혼재하여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의료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의료법인은 물론이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에 의거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법인세법 제2조는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모두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모든 비영리내국법인에게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보고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의료법인을 원칙적으로 영리법인으로 보고 있다.

의료기관은 여러 형태로 분류될 수 있으나 납세의무를 검토함에 있어서 의미 있는 분류는 법인병원과 개인병원이다. 왜냐하면 세법은 의료기관의 납세의무를 법인과 개인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법은 개인병원의 경우 일반사업자와 같이 사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병원에 대해서는 공익성과 비영리성을 인정하여 각종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법인병원은 비영리법인에 속한다.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의 대표적인 것은 의료법인이며, 그 외에 공공기관 등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세법은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해 당해 법인의 비영리성과 공익성을 인정하여 각종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의료법인과 관련이 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일치되지 않고 있다.

첫째, 법인세법 제2조는 국내의 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만 있는 외국법인은 모두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연히 법인세법에 의거 국내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조는 비영리법인으로 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②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를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부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서는 공익법인을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⑥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⑦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⑧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⑨ 법인세

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 ⑩ 위 '①'호 내지 '⑤'호·'⑦'호 또는 '⑧'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익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 IV. 우리나라 의료기관에 대한 현행조세체계

### 1. 소득과세에 대한 조세체계

#### 가. 의료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

우리나라의 세법은 의료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 중 개인병원은 소득세법에 의거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의료법인 등 법인병원의 경우에도 일반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납세의무가 있다. 의료법인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다. 법인세법 제2조에 의거 모든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여기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인 의료법인도 당연히 포함된다. 의료법인이 아니면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기관은 소득세법 제1조에 의거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제19조에 의거 개인이 운영하는 의료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4호는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 제13호에서는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사업소득에 포함하고 있다.

의료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과세되고,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의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의미하는데, 이에는 다음의 사업 또는 수익에 포함된다. 즉 ① 의료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음), ②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③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⑤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

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다. 다만,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 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범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⑥ 위 '①'호 내지 '⑤'호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 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 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손금산입

의료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거 각 사업연도에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익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의거 당해의료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즉, ① 의료법인이 당해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②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즉, ①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기기중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의료기기, ③ 초음파영상기·자기공명영상기·양전자단층촬영기를 말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일정한도의 범위 안에서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일정한도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이에는 ①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②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③ 의료법인이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④ 위 '①'호 내지 '③'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현행 50%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포함된다. 위 '④'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의거 당해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함)에서 위 '①' 내지 '③'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

손금(즉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과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9항에 의하면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의료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의료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 중 일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그 잔액은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여기서 일정조건이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의미한다. 즉 ① 해산한 때, ②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④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함) 다만,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일정법인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일정법인이라 함은 ①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③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등이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61조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다. 기부금에 지출한 금액의 손금산입

의료기관은 비영리사업을 하는 특수기관으로서 많은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여러 제한을 두어 의료기관이 기부금을 받는 경우 조세특례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첫째, 법인사업자가 의료기관에 기부금을 주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24조에서는 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규정을 두고 있다. 법인세법 제24조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의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 일정한도내의 범위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이라고 한다. 이 경우 지정기부금이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둘째, 개인사업자가 기부금을 의료기관에 주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34조는 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규정을 두고 있다. 소득세법 제34조는 개인이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의 목적으로 지출한 경우 일정한도내의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지정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은 개인이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합계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에서 법정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셋째, 법인이나 개인이 특정법인에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은 과세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법인이나 개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정법인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특정법인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이라 함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함) 등이다. 그리고 동법률 제73조 제2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자산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출연자산가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이 경우 금전외의 출연자산가액은 출연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함).

#### 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과세

의료기관중 일정규모 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각종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조세특례규정으로 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있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즉 의료업을 하는 사업자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의료업을 주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이며, 이와 동시에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권상장법인 등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제외대상기업이 아닐 것)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병원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조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의료기관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사업용자산,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설비,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추후 일정기간동안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설비, 정보보호 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셋째,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에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그밖에 전자상거래설비, 생산정보화설비, 인사급여 등 2 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필요경비) 및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넷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정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일정감면비율이라 함은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안에서 병원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고, ②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병원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섯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병원이 전자입찰 방식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 전자 결제망을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



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하는 분에 대하여 그 구매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마. 기타

세법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해 법인세법 등에서 각종 조세특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세분하여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법인세법 제62조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즉,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포함)으로서 원천징수 된 경우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둘째, 법인세법 제62조의2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즉,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이 주식 또는 출자 지분, 토지 또는 건물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의해 계산된 양도소득산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셋째, 법인세법 제76조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 가산세의 특례를 두고 있다. 즉,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넷째, 법인세법 제110조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한함)이 새로 수익사업(이자, 할인액, 배당, 분배금, 주식양도소득, 고정자산 양도소득 등의 수익사업은 제외)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섯째, 법인세법 제112조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위 넷째에서 설명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

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법인세법 제113조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 2. 소비과세에 대한 조세체계

의료법인의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첨단의료기기의 수입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후속조치의 불비로 인하여 실제로 경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첫째, 의료법인의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공급자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인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의거 의료법인이 매입한 재화 혹은 용역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는 국·공립의료기관, 지방공사인 의료원 및 의료법인(학교법인·특수법인·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의료기관을 포함)이 도입하는 첨단 의료용 기기를 국내에서 제작하기에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 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의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

셋째, 특별소비세법 제18조는 환자수송전용 승용자동차,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되는 것, 외국으로부터 사원·교회 등에 기증되는 식전 또는 예비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 또는 교육용에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것, 의료용·의약품제조용·비료제조용·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등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 3. 재산과세에 대한 조세체계

지방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서 재산과세에 대해 각종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는 의료법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의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함)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 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출연한 당해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은 의료법인,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의료법인,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 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출연한 당해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셋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은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이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가액을 의료법인,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아래 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①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출연 받은 재산(당해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 등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③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④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제외)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⑤ 위 '②'의 운용소득을 일정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위 '④'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일정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⑥ 기

다 출연 받은 재산 및 직접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일정기준에 의거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다.

넷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항은 의료법인, 공인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 친족,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재산의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정가액을 의료법인,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섯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법인, 공인법인 등의 이사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봄)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의료법인, 공인법인 등의 임·직원(이사를 제외)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은 의료법인, 공인법인 등(공익기여도 등을 감안한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공인법인 등을 제외)이 특수 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일곱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는 의료법인, 공인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의료법인, 공인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 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3인 이상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료법인, 공인법인 등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일정 의료법인, 공인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덟째,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 2는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즉,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서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에 의한 증여세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홉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는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탁을 통하여 의료법인, 공인

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열째, 지방세법 제270조는 다음과 같은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동법 제6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열하나째, 지방세법 제278조는 산업인력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즉,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재활사업·의료사업·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그 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열둘째, 지방세법 제287조 제1항은 국민건강증진사업자(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한 한국건강관리협회,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열셋째,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은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

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세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열넷째,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등록세의 비과세), 지방세법 제163조(용도구분에 의한 면허세의 비과세), 지방세법 제184조(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세법 제234조의 12(용도구분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지방세법 제245조의 2(용도구분에 의한 사업소세의 비과세)의 규정에 의거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등)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하는 경우 각각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특히 등록세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열다섯째,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8조의 2에 의하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에 속하지 않는 업종에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이 포함된다.

## V.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의 개선방안

### 1. 과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는 근본적으로 의료업을 영리업으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각종 조세특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있는 관점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의료에 관한 조세체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복지분야인 교육과 다르게 차등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중요한 복지분야 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은 학교법인에 비해 차등과세 되고 있다. 교육과 의료는 대표적인 공공재로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간기관이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 및 교육의 수입은 임의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비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의료수입은 보험수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도 한계에 이른다. 따라서 의료업의 경우 수입측면이 비탄력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국가가 나서서 각종 조세특례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업에 대하여는 교육분야에 비하여 너무나 많은 차별적 규정을 두는 등 불리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고 있으나, 의료업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의료업의 경우에도 교육 분야에 주어진 각종 조세특례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한 인생에서 40대 이전에는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그 이후의 남은여생은 의료와 관계된다는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의료업의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세제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기관의 운영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의료업을 운영하는 주체에는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 ②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③ 의료법인, ④ 개인 등이 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각 운영주체별로 차등하여 세제지원을 두고 있으므로 의료업의 경쟁저하는 물론이고 전반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 2. 소득과세에 대한 개선방안

우리나라 의료업에 대한 소득과세는 기본적으로 의료업을 영리업으로 보고 있으며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세특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①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③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등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인에 대해

서는 일정범위내에서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도록 차등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의료업의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조세특례가 적용됨으로써 의료기관간의 경쟁 및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법인 등에 대해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조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의료기관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자에는 개인과 법인이 있는데, 기부금의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에 있어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거 일정소득금액의 5%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만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 일정소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은 개인 및 법인의 지정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일정소득금액의 50%를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을 대학 등에서 운영하느냐, 아니면 의료법인에서 운영하느냐에 따라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의료법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며, 차등적용 할 아무런 효익이 없으므로 차등규정을 철폐하여야 한다. 의료법인은 출자자에게 수익의 일부를 배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부기관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조세특례제한법 73조 제1항은 개인 및 법인이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일정소득금액의 50%를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점은 국립암센터의 경우에는 지출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사립학교, 평생교육시설,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받아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에만 지출하도록 제한되어 있는데 비하여 국립암센터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국립암센터와 같은 수준에서 지출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손금인정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중소기업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그러나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과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초기에 많은 투자금액을 필요로 하는 의료업도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감면비율은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안에서 병원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고, ②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병원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종업원수의 인원제한 없이 100분의 10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감면비율에서 의료업,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하여 10%로 하고, 나머지 업종은 위 ①에서 20%, ②에서 30%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업을 일반도소매업과 같은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의료업의 공익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의료업을 도, 소매업 등과 같은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규정은 배제하고 감면비율을 20 내지 30%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병원이 수도권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것도 불합리하다.

여섯째, 같은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대학에 근무하느냐, 대규모병원인 교육수련 병원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 지급되는 연구보조비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비과세되고 있으나, 교육수련병원의 전문의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지 않아 불공평하다. 의료와 교육은 정부의 간섭을 받고 있어 수입이 매우 비탄력적이므로 이에 종사하는 의료진 및 대학교원 등에 지급되는 연구보조비는 당연히 비과세되어야 한다.

일곱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하면 지방소재 중소병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감면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중소병원의 경우에도 첨단의료기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들에게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인정될 필요가 있으나, 병원의 수도권집중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차등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각종 조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는데, 같은 법 제9조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 같은 법 제10조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같은 법 제11조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이중 특히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경우 의료 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아홉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의하면 정부가 경기조절 등을 위해 사업용자산 투자액의 10% 범위 안에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여기에 병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제조업 등 16개 업종만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의료보건업의 경우 2000년 이후 의료기기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인정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업의 경우 일반 제조업의 경우와 같이 막대한 고정자산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일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는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함), 또는 뉴스 제공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의료업이 빠져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 3. 소비과세에 대한 개선방안

의료법인은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부담을 지고 있으며, 또한 첨단의료기기의 수입에 따른 관세경감에 따른 제도불비로 인한 부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저소득층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의료업에 대한 면세제도는 의료수요자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하지만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제조업 등 타업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의료기기 등 고가의 고정자산을 구매하게 되어 불공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의료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혹은 의제규정을 두게 되면 병원 등의 원가를 줄여 줌으로써 의료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는 국·공립의료기관, 지방공사인 의료원 및 의료법인(학교법인·특수법인·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의료기관을 포함함이 도입하는 첨단 의료용기기를 국내에서 제작하기에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 률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정경제부령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4. 재산과세에 대한 개선방안

지방세법에서는 용도구분에 의한 지방세의 비과세대상의 결정기준이 되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의료법인의 의료업이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의료업의 운용주체에 따라 지방세가 각각 다르다.

첫째,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8조의 2에 의하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에 속하지 않는 업종에 고등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이 포함된다. 그리고 지방세법은 개인병원이나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은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하지만,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공의료법인 등은 비과세 또는 면제하고 있다. 단,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동일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다르게 과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다만, 1973년 9월 20일부터 시행된 의료법시행령(제6863호)에 의하면 “이 영 시행당시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개설한 사립학교에 의한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1973년 9월 20일 이전에 병원 등을 개설한 재단법인의 경우 지금도 취득세 등의 지방세가 비과세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등록세의 비과세), 지방세법 제163조(용도구분에 의한 면허세의 비과세), 지방세법 제184조(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세법 제234조의 12(용도구분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지방세법 제245조의 2(용도구분에 의한 사업소세의 비과세)의 규정에 의거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하는 경우 각각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업의 경우 이 규정에 의거 동일하게 지방세가 비과세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은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업에 대해 도시와 지방을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차등규정을 없애야 할 것이다.

## VI. 결 론

현대국가는 경제발전이 이루어질수록 의료와 교육 등 복지 분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진다.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공교육 및 공공의료의 점유율이 높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간분야에서 90% 정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분야가 공공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부는 조세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는 기본적으로 의료업을 영리사업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일부의 공익성을 인정하여 제한적으로 조세특례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의료분야는 교육 분야에 비하여 너무 현격한 낮은 차등지원을 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 및 조세특례의 개선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의료법인에 대해 의료법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있으나 세법은 영리사업으로 보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의료업에 대해서는 교육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특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서로 동일한 수준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등 노령화시대를 맞아 의료분야의 경우에도 교육에 상응하는 상당한 관심이 대두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의료업을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각종 조세특례 등이 다르게 규정되어 의료기관간에 경쟁을 저하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운영 주체 간 차등과세를 없애야 할 것이다.

셋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에서 의료법인은 평생교육시설, 사회복지법인, 국립대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등의 법인과 차등규정을 두어 손금산입범위가 축소되어 있으므로 동등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의료기관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범위액이 의료업의 운영주체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의료법인에 대해 국립대학병원의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부금을 받은 의료법인은 국립암센터와 같이 지출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새로 병원을 창업하는 경우 초기 투자금액이 많이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 분야와 같이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병원의 경우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일반 업종과 같이 확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도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제도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여덟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에 의료 인력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홉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인정으로 폐지되었으나 의료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병원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하여 일부 공제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열째, 의료보건의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경영에 재무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열하나째 의료기관의 첨단의료기기의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경감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재정경제부령에서 경감대상과 경감률을 정할 필요가 있다.

열둘째, 지방세법상 지방세에 대해 의료업의 운영주체에 따라 다르게 차등감면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철폐할 필요가 있다.

열셋째, 지방세의 감면규정을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이를 없애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향후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 및 조세특례가 합리적으로 규정되고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영리병원의 도입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해 우리나라는 합리적으로 대응해나가면서 의료업에 대한 조세체계 및 조세특례를 종합적으로 개정 및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실증연구를 하지 아니하고 문헌탐색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 참 고 문 헌

공해영(1999), 공익법인 세무확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Vol.12, No.6, pp.245-262.

김광운, 전장식(1999),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감면수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병원경영학회, 한국병원경영학회지, Vol.4, No.2, pp.330-353.

- 김광윤, 전장식(2001), 의료서비스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유인 실증연구,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 Vol.30, No.3, pp.719-743.
- 김대영(1999), 과세쟁점사례를 분석을 통한 비영리법인과세의 개선방향,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pp.259-289.
- 김진수(1996),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정책보고서96-10.
- 노재성(2000), 비영리법인 과세체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 노진곤(1999),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 pp.63-85.
- 박민(2002), 의료법인세제에 관한 합리적 개편, 조세법연구, Vol.8, No.1, pp.62-83
- 박상임(1994), 현행 우리나라 비영리조직의 세무회계에 관한 연구, 한국생산성학회, 생산성연구(생산성논집), Vol.9, No.1, pp.243-272.
- 박상임(1996),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Vol.7, No.0, pp.291-326.
- 보건복지부(2003), WTO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서비스분야 동향, 국제협력담당관실, 6.13.
- 손원익(1995),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정책보고서95-05.
- 손원익(1997), 국민의료와 조세정책,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Vol.15, pp.26-48.
- 손원익(2000), 공익법인관련 세제의 현황,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Vol.47, pp.6-22.
- 손원익(2000), 비영리법인 관련세제의 선진화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정책보고서.
- 손원익(2001), 비영리법인 관련세제의 선진화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Vol.60, pp.83-86.
- 손원익(2002), 의료기관관련세제의 현황 및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Vol.68, pp.6-14
- 송건영(2003), 영리의료법인허용의 쟁점논의, 대한병원협회지 2003.1월2월호, 대한병원협회, 1
- 윤철홍(1997), 공익법인에 관한 소고,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10, pp.129-154.
- 이종래(2000), 공익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 전장식(2000), 의료서비스 증진과 조세유인,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5
- 최삼철(1995),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체에 대한 조세부과제도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pp.157-171.
- 하홍준(199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영리법인재산의 사적유용규제, 세법연구회, 조세법연구, Vol.3, pp.276-299.
- 하홍준(1998),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Vol.4, pp.445-474.
- Bain, Craig E., Alan I. Blankley, and Dana A. Forgione(2001), *The Methodist Hospital*

- System: Tax Exemption and Charitable Responsibilities of Not-for-Profit Hospitals*,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Vol. 16, No. 1, February pp.67-97.
- Cain, Rita Marie, *Marketing Activities in the Non-Profit sector - Recent Lessons Regarding Tax Implications*, American Business Law Journal, Vol. 36. pp.349-376.
- Gamm, Larry D.(1996), *Dimensions of Accountability for Not-for-Profit Hospitals and Health systems*, Health Care Management Review, Spring pp.74-86.
- Montoya, Isaac D.(1998), *Charitable Care and the Nonprofit Paradigm*, Journal of Healthcare Management 43:5 September/October, pp.416-426.
- Potter, Margaret A.(1992), *Taxation of Nonprofit Hospitals: A Cost Impact Model*, Hospital &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37:1, Spring, pp.89-102.
- Sansing, Richard C(2000)., *Joint Ventures between Nonprofit and For-Profit Organization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22.Supplement, pp.76-88.
- Steinberg, Richard, *"Unfair" Competition by Nonprofits and Tax Policy*, National Tax Journal, Vol. XLIV, No. 3, pp.351-364.
- Thorpe, Kenneth E. and Charles E. Phelps(1991), *The Social Role of Not-for-Profit Organizations: Hospital Provision of Charity Care*, Economic Inquiry, Vol. XXIX, July, pp.472-484.
- Verz, C. Mike, Thomas E. Stitzel(1999), *How Much Profit Can a Not-for-Profit Hospital Make? A Defense of the Property Tax Exemption*, Journal of Health Care Finance, Summer, pp.59-66.
- Wilkicki, Kathryn J. Jervis(2001), *The Effects of Not-for-Profit Hospital Reported Profits and Charitable Care on Perceptions of Tax-Exempt Statu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Vol. 23, No. 2, Fall, pp.50-58.
- Yetman, Robert J.(2001), *Tax-Motivated Expense Allocations by Nonprofit Organizations*, The Accounting Review, Vol. 76. No. 3, July, pp.297-311.
- Zimmerman, Dennis, *Nonprofit Organizations, Social Benefits, and Tax Policy*, National Tax Journal Vol. XLIV. No. 3 pp.341-349.
- 橋留隆志(2002), *非營利法人の會計, 稅務, 監査*, 同文館出版.
- 杉山幹夫(2001), *醫療法人の會計と稅務*, 4訂版, 同文館.